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회)	

법제처 직제 일부 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·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(5급 1명, 9급 1명)을 감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1. 24. ~ 12. 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37”을 “23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36”을 “234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21”을 “219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의 정원 2명(5급 1명, 9급 1명)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법제처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37</u>	<u>235</u>	-2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236</u>	<u>234</u>	-2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221</u>	<u>219</u>	-2
•	•	•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19